

의안 번호	제3291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2. 6. 10. 공포, 2023. 6. 11. 시행)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(2023. 6. 9. 공포, 2023. 6. 11. 시행)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구성(안 제2조)
- 나. 위원의 임기 및 해촉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회의(안 제6조)
- 마. 의견청취 등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(2023. 6. 1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,

○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